

2018

하·반·기

# 달라지는 관세행정

2018. 7.



## 납세자 권익보호·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납세환경 구축

1 관세 환급신청 전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 신설	01
2 정기 관세조사 시 서면조사 확대	02
3 자진신고자 등의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 경감 확대	03
4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04

## 수요자 중심의 FTA 활용·지원

5 FTA활용 취약품목에 대한 원산지 간편 인정제도 확대	05
6 FTA협정세율 적용물품의 협정관세 사후 적용대상 확대	06
7 FTA원산지 증빙자료 보관 간소화	07
8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간 신청서류 일원화	08

## 수출입 통관제도의 합리적 개편

9 유통이력신고 대상 물품 신규지정 및 재지정	09
10 물품검사에 따른 소액 손실보상 지급절차 간소화	10
11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감면대상 조정	11
12 일시수출입 차량의 재수출입 신고세관 확대	12
13 특송물품 배송지 정보 제출대상 확대	13
14 특송업체 등록요건 완화	14

##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을 위한 수출입 물류제도 개선

15 보세공장 특허요건 완화	15
16 보세판매장 특허공고 확대	16
17 보세판매장 운영인 업무사항 등 보고기한 개선	17
18 항공물류 원활화를 위한 하기신고 절차 간소화	18

## 불편·불합리한 관세행정 절차 개선

19 현금담보 제공 및 반환절차에 자동이체 방식 도입	19
20 환급신청 서류의 온라인(전자통관시스템) 제출 허용	20
21 영업등록증 발급절차 개선	21
22 환전영업자의 비대면 환전업무 허용	22
23 모바일 선용품시스템 구축	23
24 유니패스(UNIPASS) 기능 개선	24
25 관세사 직무보조자 징계시효 신설	25

1

관세 환급신청 前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 신설

(세원심사과 042-481-7875)

종 전	달라지는 내용
<input type="checkbox"/> <신 설>	<input type="checkbox"/> 소요량 사전심사제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 환급신청 前 소요량 계산방법 및 산정된 소요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세관장에게 심사 요청</li> <li>• 관할지 세관장에 소요량 계산서 등 제출 후 <u>30일</u> 내 심사결과 통지</li> <li>• 통지받은 날로부터 <u>1년간</u> 사전심사결과 유효(환급신청)</li> </ul>

○ ( 기대효과 ) 과다환급 관세 추징 등에 따른 수출업체 부담완화

○ ( 시행일 ) '18. 7. 1.(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개정)

## 2

## 정기 관세조사 시 서면조사 확대

(법인심사과, 042-481-7982)

종 전	달라지는 내용
<input type="checkbox"/> 방문조사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조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20일 이내에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li> </ul>	<input type="checkbox"/> 서면조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면조사만으로도 심사목적은 달성할 수 있는 경우 <u>방문조사를 생략</u>하여 관세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부담 완화</li> </ul>

○ ( 기대효과 ) 관세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부담 완화

### 3

## 자진신고자 등의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 경감 확대

(조사총괄과, 042-481-7818)

종 전	달라지는 내용
<input type="checkbox"/> 조사개시 전 자수자, 조사에 적극 협조한 자에 대하여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의 15% 감경	<input type="checkbox"/> 조사개시 전 자수한 사람의 벌금 상당액 <u>감경 비율을 50%로 상향</u>
<input type="checkbox"/> 수입세액 정산제도 지정업체*에 대한 감경 없음 <small>* 관세법 제38조제3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의2에 따라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로 지정된 업체</small>	<input type="checkbox"/> 스스로 세액오류사항 등을 자율점검하고 관세사의 검증을 받아 세관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u>성실 납세 업체에 대한 감경(15%) 신설</u>
<input type="checkbox"/> 심신미약자, 장애인 외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경 없음	<input type="checkbox"/>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 <u>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경(15%) 신설</u>

○ ( 기대효과 ) 사회적 약자 혹은 관련 법규를 잘 알지 못해 발생하는 단순 경미사범의 처분 경감

○ ( 시행일 ) '18. 5. 2.(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 4

###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심사정책과, 042-481-7745)

종 전	달라지는 내용
<p><input type="checkbox"/> 납세자의 권리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헌법 등에 의한 권리 존중과 보장 등</li> <li>•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 등</li> </ul> <p>&lt;신 설&gt;</p>	<p><input type="checkbox"/> 추 가</p> <p>(현행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의 근거에 따른 관세조사 선정</li> <li>• 납세자의 동의 없는 장부 등 일시보관 금지</li> <li>• 조사기간 연장·중지·재개시 사전에 안내 받을 권리 등</li> </ul> <p>※ 관세조사 대상의 선정, 개시부터 종결, 권리구제 절차까지 일련의 과정에 맞추어 납세자 권리 사항을 순차적으로 재구성해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p>

○ ( 기대효과 ) 납세자권리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 관세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헌장을 개정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

○ ( 시행일 ) '18. 8월 예정 (『납세자권리헌장 고시』 개정)

## 5

## FTA 활용 취약품목에 대한 원산지 간편 인정제도 확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06)

종 전	달라지는 내용
<p>□ 농수축산물 생산자가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것으로 고시한 서류를 갖춘 경우, 이를 원산지 충족 증빙서류로 간주</p> <p>* 원산지 간편 인정 대상 <u>1,145개 품목</u></p>	<p>□ 원산지 간편 인정 대상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목 : <u>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u></li> <li>● 문서 : 공급확인서</li> </ul> <p>※ 하반기 품목 추가 추진 예정</p>

- ( 기대효과 ) 원산지증빙 관련 인력 및 비용 절감과 농수축산물의 FTA활용률 증가로 간접 고용창출 및 수출 확대 기대
- ( 시행일 ) '18. 5. 3.(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개정)

6

FTA협정세율 적용물품의 협정관세 사후 적용대상 확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06)

종 전	달라지는 내용
<p>□ 일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2개 FTA 협정 적용이 가능하고 협정 간 세율차 존재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자 부주의 등으로 고세율의 FTA를 적용받은 이후에, 저세율의 다른 FTA 협정을 재적용 받을 수 없음</li> <li>• 2개 FTA 적용 가능국가 : 베트남, 싱가포르, 중국</li> <li>• (예) 베트남産 기어박스 : 한-베트남 FTA 0%, 한-아세안 FTA 5%</li> </ul>	<p>□ 1국 2 FTA협정인 경우, 다른 FTA 협정적용을 위한 사후 재적용 허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주의 등으로 고세율 FTA 특혜 적용 받은 경우, <u>수리후 1년 이내</u> 저세율의 FTA 협정으로 재신청 가능</li> </ul>

○ ( 기대효과 ) 원자재 수입 중소기업의 FTA혜택을 활용한 수입 완제품 가격 경쟁력 확보 및 관세절감

○ ( 시행일 ) '18. 7월( 「FTA특례법 §9 해석에 관한 지침」 개정)

## 7

## FTA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 간소화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06)

종 전	달라지는 내용
<p>□ 원산지 증빙서류의 전자적 보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자료 전달매체로 한정</li> <li>* 생산자 등이 전자적으로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컴퓨터 서버, 클라우드 컴퓨팅 등 <u>자료보관 매체에 보관된 자료의 효력 문제발생</u></li> </ul>	<p>□ 원산지 증빙서류 전자적 보관방법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 전달매체 및 <u>보관매체</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의 자체시스템(ERP등)에서 관리되는 전자문서를 자료 보관으로 효력 인정</li> </ul> </li> </ul>

○ ( 기대효과 ) 중소기업의 부족한 인력과 열악한 사업장 환경에서 관련 서류의 인쇄·관리·보관에 따른 직간접적인 비용 절감 효과 기대

- 더불어, 원본 분실 등에 따른 위험 부담 해소로 FTA 활용증대

○ ( 시행일 ) '18. 하반기 ( 「FTA특례법시행령」 및 「FTA특례고시」 개정)

## 8

##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간 신청서류 일원화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06)

종 전	달라지는 내용
<input type="checkbox"/>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간 제출 서류 일부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청 : 원산지소명서</li> <li>• 상공회의소 : 기준별사실보고서</li> </ul>	<input type="checkbox"/>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기관 간 상이했던 제출서류 일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청 · 상공회의소 : <u>원산지소명서</u></li> </ul>

○ ( 기대효과 ) 발급기관 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류를 일원화함으로써 기업의 문서 작성 및 관리 편의를 증진하고, 나아가 두 기관 간 원산지 증명 관리업무 협업을 통한 FTA 활용기업 지원 촉진

○ ( 시행일 ) '18. 7월 (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개정)

(통관기획과 042-481-7815)

종 전	달라지는 내용
<p>□ 유통이력신고대상물품 38개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일염(비식용), 대두유(비식용), 복어(금밀복), 황기(식품용), 냉동고추, 뱀장어, 당귀(식품용), 냉동조기, 건고추, 향어, 활낙지, 지황(식품용), 천궁(식품용), 사탕무당(설탕), 냉동옥돔, 작약(식품용), 황금(식품용), <u>냉동고등어</u>, <u>냉동갈치</u>,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돔, 냉동꽂치, 김치, 천일염(식용), 팔, 냉동꽃게, 콩(대두), 참깨분, 참깨, 땅콩, 도라지, 염장새우, 냉장갈치, 냉동멸치(비식용), 냉동기름치(비식용), 꽃가루(비식용)</li> </ul>	<p>□ 유통이력신고대상물품 39개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일염(비식용), 대두유(비식용), 황기(식품용), 냉동고추, 뱀장어, 당귀(식품용), 냉동조기, 건고추, 향어, 활낙지, 지황(식품용), 천궁(식품용), 사탕무당(설탕), 냉동옥돔, 작약(식품용), 황금(식품용),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돔, 냉동꽂치, 김치, 천일염(식용), 팔, 냉동꽃게, 콩(대두), 참깨분, 참깨, 땅콩, 도라지, 염장새우, 냉장갈치, 냉동멸치(비식용), 냉동기름치(비식용), 꽃가루(비식용), <u>에이치(H)형강</u>, <u>활우렁쉥이</u>, <u>냉장홍어</u>, <u>활떡장어</u>, <u>활새꼬막</u></li> <li>- (신규지정) 에이치(H)형강,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떡장어, 활새꼬막</li> <li>- (재지정) 대두유(비식용), 냉동조기, 미꾸라지, 가리비, 돔, 천일염(식용), 냉장갈치</li> <li>- (삭제) 복어(금밀복), 냉동고등어, 냉동갈치</li> </ul>

○ ( 기대효과 ) 국내 유통 중 원산지 둔갑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여 국내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 ( 시행일 ) '18. 8. 1.(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 개정)

(통관기획과, 042-481-7733)

종 전	달라지는 내용
<p>□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 세관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li> </ul>	<p>□ 손실보상 지급 절차 간소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손실보상금 청구액이 소액*</u>인 경우에는 <u>위원회의 심의를 생략</u>하고 세관장이 보상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li> </ul> <p>* 기준금액 액수는 현재 검토중임</p>

○ ( 기대효과 ) 물품검사를 수행한 세관공무원 소속 세관장의 직권 결정에 따른 신속한 보상금 지급으로 민원인 불편 최소화

※ 소액보상금 청구건 심의를 위해 위원회 개최 시 위원참석 수당 발생에 따른 비용 발생 및 업무처리 지연

○ ( 시행일 ) '18. 하반기 예정(「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통관기획과 042-481-7816)

종 전	달라지는 내용
<input type="checkbox"/> 감면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3개 품목 운영</li> </ul>	<input type="checkbox"/> 감면대상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121개</u> 품목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외) 전기스팀보일러, 가스터빈의 로터 등 <u>41개</u> 품목</li> <li>- (추가) 다이부착기, 저온 필터 막힘점 시험기, 전자스핀 공명 측정기 등 <u>29개</u> 품목</li> </ul> </li> </ul>

○ ( 기대효과 )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

○ ( 시행일 ) '18. 7월(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1 개정)

## 12

## 일시수출입 차량의 재수출입 신고세관 확대

(특수통관과, 042-481-7836)

종 전	달라지는 내용
<p><input type="checkbox"/> 일시수출입하는 차량의 재수출입 신고세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수출입 통관지 세관 신고</li> <li>• &lt;신 설&gt;</li> </ul>	<p><input type="checkbox"/> 재수출입 신고세관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좌 동&gt;</li> <li>• <u>해당 차량을 반출입 하고자 하는 공·항만 세관 신고</u></li> </ul>

○ ( 기대효과 ) 일시수출입하는 차량의 재수출입 신고세관을 희망하는 전국 공·항만 세관으로 확대하여 일시출입국자의 편의 증대

○ ( 시행일 ) '18. 6. 1.(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

(특수통관과, 042-481-7835)

종 전	달라지는 내용
<input type="checkbox"/> 배송지 정보 제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록통관상 수하인 주소지와 실제 배송지 주소가 다른 경우 제출</li> <li>• &lt;신 설&gt;</li> </ul>	<input type="checkbox"/> 배송지 정보 제출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좌 동&gt;</li> <li>• <u>수입신고서상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와 실제 배송지 주소가 다른 경우까지 확대</u></li> </ul>

○ ( 기대효과 ) 수입신고되는 특송품도 실제 배송지 정보를 제출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특송화물 관리 실효성 확보

○ ( 시행일 ) '18. 7. 1.(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 14 특송업체 등록요건 완화

(특수통관과 042-481-7835)

종 전	달라지는 내용
<p><input type="checkbox"/> 특송업체 등록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법」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을 필한 자는 외국무역선을 이용한 해상 특송물품만 취급 가능</li> </ul>	<p><input type="checkbox"/> 특송업체 등록 요건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무역선 뿐만 아니라 <u>외국무역선을 이용한 항공화물 특송업체로 등록 가능</u></li> </ul>

○ ( 기대효과 ) 특송업체 등록요건을 완화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

○ ( 시행일 ) '18. 7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 15 ▶ 보세공장 특허 요건 완화

(수출입물류과, 042-481-7906)

종 전	달라지는 내용
<p>□ (보세공장 특허요건) 보세화물 분실·도난 시설 완비</p> <p>• 보세화물 분실과 도난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의 완비</p>	<p>□ 보세화물 분실·도난 시설 완비 완화</p> <p>• 보세화물 분실·도난 시설에 대해 <u>보안전문업체와 경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u> CCTV 등 감시장비의 <u>시설요건 부담 완화</u></p>

○ ( 기대효과 ) 특허요건 중 시설요건 완화로 특허준비 업체의 비용 절감

○ ( 시행일 ) '18. 9. 30.(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 16

## 보세판매장 특허공고 확대

(수출입물류과, 042-481-7853)

종 전	달라지는 내용
<input type="checkbox"/> 보세판매장 특허 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세관 게시판에 공고</li> </ul>	<input type="checkbox"/> 보세판매장 특허 공고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해당세관 <u>홈페이지 및 게시판</u>에 공고</li> </ul>

○ ( 기대효과 ) 관세청 뿐만 아니라 해당세관 홈페이지에도 특허공고를 하도록 공고 장소를 확대하여 정보 접근성 개선 및 홍보 효과 제고

○ ( 시행일 ) '18. 하반기 예정(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 개정)

## 17 보세판매장 운영인 업무사항 등 보고기한 개선

(수출입물류과, 042-481-7853)

종 전	달라지는 내용
<input type="checkbox"/>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업무사항 등 보고 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사항 등을 다음 달 <u>7일까지</u> 세관장에게 보고</li> </ul>	<input type="checkbox"/> 보고 기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사항 등을 다음 달 <u>7근무일 이내</u>에 세관장에게 보고</li> </ul>

○ ( 기대효과 ) 불합리한 보고기한에 따른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휴일 근무를 개선하여 업체 편의 제고 및 근무환경 개선

○ ( 시행일 ) '18. 하반기 예정(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수출입물류과 042-481-7835)

종 전	달라지는 내용
<input type="checkbox"/> 하기신고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하목록 제출 ⇨ 관리대상화물 선별 완료 ⇨ 하기신고서 전송 · 수리</li> </ul>	<input type="checkbox"/> 하기신고 절차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적하목록 제출 시 하기신고서 전송</u> ⇨ 관리대상화물 선별 완료 시 하기신고서 수리</li> </ul>

- ( 기대효과 ) 적하목록 제출과 하기신고 절차통합으로 신고지연에 따른 물류지체 예방 항공사 업무부담 경감 및 특송업체 비용 절감
- ( 시행일 ) '18. 12월 예정(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개정)

(세원심사과, 042-481-787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p>□ 현금담보 제공 및 반환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금담보 제공) 납세자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현금납부 후 그 영수증을 세관에 직접 제출</li> <li>• (현금담보 반환) 세관직원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담보금 지급지시서’ 제출 → 금융기관이 납세자 계좌 이체</li> </ul>	<p>□ 현금담보 제공 및 반환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금담보 제공) <u>납세자가</u>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u>자동이체를 통해 현금담보 납부</u> → 납부확인은 세관직원이 전산으로 확인</li> <li>• (현금담보 반환) <u>세관직원이</u>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u>전산으로 담보금 반환을 지시</u> → 금융기관이 납세자 계좌로 자동이체</li> </ul>

○ ( 기대효과 ) 납세자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현금담보를 수납하고 세관에 영수증을 제출하는 불편 해소 이외에도,

- 현금담보의 24시간 납부가 가능하고 납부사실이 전산으로 즉시 확인됨에 따라 재수출면세 등 통관절차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

○ ( 시행일 ) '18. 하반기 예정

(세원심사과 042-481-7873)

종 전	달라지는 내용
<p><input type="checkbox"/> 환급신청서류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L건 : 신청내역 전산확인</li> <li>• 서류제출대상 : 환급신청 서류* 환급지 세관에 제출</li> </ul> <p>* 수출 등 제공사실 확인서류,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 확인서류, 소요량 계산서류, 환급금 계산내역표, 자재명세서 등</p>	<p><input type="checkbox"/> 환급신청서류 제출 온라인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L건 : &lt;좌 동&gt;</li> <li>• 서류제출대상 : 환급신청 서류 전자통관시스템에 의한 <u>전자문서 형태 또는 자료보존매체 형태로</u> 제출 허용</li> </ul>

○ ( 기대효과 ) 서류의 전자문서형태 또는 자료보존매체 형태 제출을 통한 환급신청 비용·시간 절감

○ ( 시행일 ) '18. 9월 예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관세국경감시과 042-481-7782)

종 전	달라지는 내용
<input type="checkbox"/> 영업등록증 방문수령 또는 우편 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체의 영업등록 신청에 대하여 발급된 영업등록증은 신청업체가 직접 방문 수령하거나 우편으로 교부</li> </ul>	<input type="checkbox"/> Unipass를 통한 영업등록증 출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체의 영업등록 신청건이 심사 완료된 경우 Unipass 시스템을 통해 <u>업체에서 직접 영업등록증 출력가능</u> 하도록 개선</li> </ul>

- ( 기대효과 ) 업체의 영업등록증 수령을 위한 직접 방문의 불편을 없애고, 우편교부에 따른 우편요금 등 절감
- ( 시행일 ) '18. 9월 예정(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개정)

(외환조사과, 042-481-7932)

종 전	달라지는 내용
<p><input type="checkbox"/> 대면환전거래만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된 영업장소에서 고객과 환전 영업자 대면에 의한 환전거래만 가능</li> </ul> <p>* (온라인환전 등) 非대면 환전은 금융기관만 가능</p>	<p><input type="checkbox"/> 온라인환전*/무인환전기기환전** 허용</p> <p>*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 환전신청(계좌이체) 후 오프라인의 원하는 장소에서 환전금액 수령(지급시 대면확인)</p> <p>** 키오스크를 통해 여권 등 신분증 스캔(고객확인) 후 환전거래 수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기관이 아닌 <u>환전영업자도</u> 등록요건 충족 시 <u>온라인(인터넷, 앱) 또는 무인환전기기를 통한 非대면 환전거래 가능</u></li> <li>• <u>고객보호를 위한 등록요건 신설</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 고객정보보호 등을 위한 전산/보안설비 구비</li> <li>- (온라인) 이행보증금 예탁, 약관 및 손해배상절차 마련</li> <li>- (무인환전기기) 고객지원센터 운영</li> </ul> </li> </ul>

## ○ ( 기대효과 )

- 환전거래를 원하는 소비자 편의성 제고 및 환전비용 절감
- 신규 업무(사업) 허용에 따른 고용 창출

## ○ ( 시행일 ) '18. 5. 1. (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관세국경감시 042-481-1147)

종 전	달라지는 내용
<p>□ 선용품 적재 등 절차이행 시 방문 또는 유선 보고</p> <p>• 연간 52만건의 선용품 적재 등 허가에 대해 全數 이행착수 보고 중이나, 전산보고(7%) 제외한 93%는 업체가 전화·방문 보고하면 세관 직원이 기록·관리</p>	<p>□ 선용품 적재 등 절차이행 위한 모바일 선용품시스템 개발</p> <p>• 모바일(앱)로 <u>선용품(수출갈음) 적재·하선 시 이행착수·완료보고 가능</u></p>

○ ( 기대효과 ) 선용품의 적재 등 절차이행을 위한 전화·현장방문 축소로 민원편의 도모 및 업무 간소화

○ ( 시행일 ) '18. 7월

## 24 유니패스(UNI-PASS) 기능 개선

(정보관리과 042-481-7752)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16. 4월 국가종합관세정보망 개통 후 기능 중심의 서비스 개선 추진	□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등 유니패스(UNIPASS) 이용편리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면 재구성) 이용률이 높은 메뉴를 메인화면에 전면 배치, <u>사용자 맞춤형 콘텐츠 강화</u> 등</li> <li>• (상태별 제공정보 차별화) 비로그인, ID/PASS 로그인, 공인인증서 등 <u>상태별 서비스 이용범위 정비</u></li> </ul>

○ ( 기대효과 ) 사용자 중심의 화면 재구성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으로 고객 만족도 향상

○ ( 시행일 ) '18. 11월 예정

(통관기획과, 042-481-7857)

종 전	달라지는 내용
<input type="checkbox"/> 관세사 직무보조자 징계 시 경과 규정이 없어 기간 제한 없이 징계 처분 가능	<input type="checkbox"/> 직무보조자 징계시효 규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처분</u></li> </ul>

○ ( 기대효과 ) 관세사와 직무보조자의 징계시효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징계의 형평성 고려

○ ( 시행일 ) '18. 8월 예정(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개정)